#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66

제출년월일: 2023년 5월 30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행정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등을 위해 총정원 변동 없이 직렬·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한강사업추진단 신설로 '한강사업추진단장'(3급) 1명 및 그 산하에 '한강사업총괄부장'(4급) 1명, '한강전략사업부장'(4급) 1명 정원 신설
  - (사업소) 일반직 5급이하 △3 → 3급 +1, 4급 +2
- 나. 행정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등을 위해 연구직(10명) 및 지도직(1명)의 정원 조정
  - (연구직) 407명 → 408명(연구관 +10명 연구사 △9명) ※ 일반직 5급이하 △1
  - (지도직) 24명 → 25명(지도관 +1) ※ 일반직 5급이하 △1
- 다. 서울대공원의 사육운영직 퇴직 및 임기제 계약 만료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7명)
  - (사업소) 일반직 5급이하  $\triangle 7 \rightarrow 전문경력관(동물사육) +7$
- 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위해 일반직을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1명)
  - (사업소) 일반직 5급이하 △1 → 전문경력관(고압가스안전관리) +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협의 완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3. 5. 19. ~ 5. 23.)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효원(☎2133-672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조례 제8695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표 중 일반직 계란, 3급란, 4급란, 5급 이하 소계란, 전문경력관 소계란, 연구직 계란, 연구관란, 연구사란, 지도직계란, 지도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15					
3급	18	8		1	9	
4급	258	153	19	8	70	8
5급 이하 소계	10,235					
전문경력관 소계	157					
연구직 계	408					
연구관	73	8		41	24	

연구사	335			
지도직 계	25			
지도관	3		3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서울특별시조례 제8695호 포함]									개	정	•	안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일	[별표 4]							
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						4									
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ㅂ필 경전(제4 <u>소</u> 제1양 선턴)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총계	11,730						
(생략)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일반직 계 10,717							일반직 계	10,715						
(생 략)							(현행과 같음)								
3급	<u>17</u>	8		1	<u>8</u>			3급	<u>18</u>	8		1	<u>9</u>		
(생략)							(현행과 같음)								
4급	<u>256</u>	153	19	8	<u>68</u>	8		4급	<u>258</u>	153	19	8	<u>70</u>	8	
	(생 략)							(현행과 같음)							
5급 이하 소계	10,248					5급 이하 소계	10,235								
전문경력관 소계	149						전문경력관 소계	<u>157</u>							
(생략)							(현행과 같음)								
연구직 계	<u>407</u>		ı					연구직 계	<u>408</u>						
연구관	<u>63</u>	<u>5</u>		<u>34</u>	24			연구관	<u>73</u>	<u>8</u>		<u>41</u>	24		
연구사	<u>344</u>		I					연구사	<u>335</u>						
지도직 계	<u>24</u>							지도직 계	<u>25</u>						
지도관	<u>2</u>			<u>2</u>				지도관	<u>3</u>			<u>3</u>			
(생략)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총 정원 변동이 없어,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박효원 (🕾 2133-6729)